

# 2001년 형사재판실무편람 등 정보공개청구운동 관련 자료 묶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 < 목차 >

1. 01/04/11 2001년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 정보공개청구서
2. 01/04/11 법원행정처 감사민원담당관실 정보공개청구 접수증
3. 01/04/24 법원행정처 감사관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4. 01/06/22 법원행정처 감사관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5. 01/07/05 대법원 행정심판청구사건 관련 답변서(사법정책연구실의 의견서) 송부
6. 01.07/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통지서
7. 01/08/20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8.1. 01/04/02 이념계도활용규칙 운용에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 8.2. 01/04/09 경찰청장의 답변
- 8.3. 이념계도활용규칙
9. 01/05/09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0. 01.05.15 경찰청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b>※ 접수일자</b>		<b>※ 접수번호</b>
청구인	이름 (법인명등 및대표자)	박범용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 110-522 (Tel. 02-741-5363 Fax. 02-741-5364)

정보내용

2001년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

사용목적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 <input type="checkbox"/> 사업관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감시 <input type="checkbox"/> 쟁송관련 <input type="checkbox"/> 재산관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공개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01년 4월 11일

청구인 **박범용** (서명 또는 인)

**대법원장** 귀하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이름	
접수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정보통신부			
※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 스 표 지

수 신 : 박 범 용

제 목 : 정보공개청구 접수증

매 수 : 총 2 매 (표지포함)

(FAX) 741 - 5364

발신 : 법원행정처 감사민원담당관실( )

팩스번호 : 533 - 5868

전화번호 : 3480 - 1476 ~ 81



Faint text and markings in the upper right area.



Faint text and markings in the lower right area.

접 수 종

접수번호	22	청구인 이름	광 범 용
접수자	직 급	이 름	김 세 지 (인)
<p>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2001년 4월 11일  정보통신부</p> <p>*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3480-1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15012-12111인  
98. 11.10. 개정승인

법원리정서 감사담당장안외

210mm x 297 mm  
(일반용지 60g/m<sup>2</sup>)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 감민 1822 -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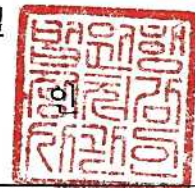
수 신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29 4층 박 범 용

접수일자	2001. 4. 11.	접수번호	23
청구정보내용	2001년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		
공 개 내 용			
비 공 개 (전부 또는 일부 사유)	덧붙임과 같음		
공 개 방 법 사 용 목 적	직 접 공 개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우 송 공 개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공 개 일 시		공개장소	
수 수 료 (A)	우편요금(B)	수수료감면액(C)	계(A+B-C)
원	원	원	원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1년 4월 24일

법원행정처    감사관





<덧붙임>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박 범 용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Tel. 02-741-5363, Fax. 02-741-5364)		
피 청 구 인	법원행정처 감사관	재 결 청	법원행정처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청구인의 '2001년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실 무편람' 공개청구에 대한 법원행정처 감사관의 2001. 4. 24. 자 비공개 결정			
처분있음을 안 날	2001. 4. 26.			
심 판 청 구 취지 ·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법원행정처 감사관은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제1호, 제5호,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2001. 4. 24.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 였음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01. 6. 22.</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청구인 박 범 용 </div>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행정심판 청구 취지 · 이유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아래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

이는 '재판실무편람의편찬발간및관리등에관한내규 제8조 [대외비 관리]' 규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실무편람이 비공개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내규는 법원행정처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규일 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실무편람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이는 형사재판실무편람이 '재판과정(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판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사재판실무편람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판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재판은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국민들은 당연히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판결의 기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형사재판실무편람의 내용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일일이 따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에 쉽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형사재판실무편람 내용의 근거가 빈약하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면, 이는 오히려 공정한 판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실무편람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바, 형사재판실무편람은 법원의 공무수행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될 수도 없고, 공개될 경우 법원의 정당한 이익에 도움이 되면 됐지 현저히 해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실무편람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이유에서, '2001년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법원행정처 감사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추세는 가능한 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 4월 24일 법원행정처 감사관의 '2001년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에 대해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당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끝>

# 대 법 원

우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 전화 (02)3480-1476 전송 (02)533-5868  
 감사민원담당관실 / 담당사무관 이우돈, 담당자 김세진

문서번호	감민 1119 - 1037	선 결	<b>신 장</b>	7/4/2001	지 시		
시행일자	2001. 7. 5. (5년)	접 수	일 자 시 간	2001. 07. 6 17: 00	결 재 · 공 람	담 당 관	이 우 돈
(경 유)			번 호	768			
수 신	기획조정실장	처 리 과		법무담당관실			
참 조	법무담당관	담 당 자		김세진			

제 목 행정심판청구사건 관련 답변서 송부

1. 법무 1119 - 285(2001. 6. 2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답변서를 덧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덧붙임 : 답변서 1부. 끝.

  
 감 사 관

# 답 변 서

2001행심4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범 용

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2001행심4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사법정책연구실의 의견서를  
답변서로 제출합니다.

덧붙임 :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의견 1부.

감사민원담당관실

#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의견

사법정책연구실

## I. 재판실무편람의 개요

- 재판실무편람은 신규임용이나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판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중요 소송유형 별로 재판절차상 유의할 사항이나 실무 관행·업무처리기준 등을 정리하여 실무에 참고하도록 제공된 실무참고 책자임.
- 이러한 재판실무편람으로 인해 일선 법원의 법관들은 구체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재판실무편람을 참조하여 해당 재판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고, 효율적인 업무 개선을 이루게 되며, 사무처리의 통일성과 지속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됨.
- 대법원에서는 2000. 2. 확정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에서 주요한 소송유형별로 재판실무편람을 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0. 7. 재판실무편람 시리즈 제1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실무편람」을 발간하고, 2001. 2. 재판실무편람 시리즈 제2호 ~ 제8호로 「형사재판실무편람」, 「노동재판실무편람」, 「건설재판실무편람」, 「의료재판실무편람」, 「언론재판실무편람」, 「국제거래재판실무편람」,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을 각 발간하여 전국의 법관들에게 배부하였음.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형사재판실무편람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재판실무편람 작성계획에 의해 재판실무편람 시리즈 제2권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집필자는 일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경험이 있는 중견법관들 중에서 선정되었고, 편람의 구체적인 서술 내용에 관하여



대법원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부여한 바는 없음.

## II. 공개될 수 없는 이유

### 1. 법령에 의한 비공개 자료임(제1호)

- 재판실무편람은 그 성격상 재판업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외적으로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법관 전용의 대외비 자료로 분류하여 소송대리인 등 법원 외부의 사람은 물론 법원 일반직원도 재판실무편람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대외비 관리는 2000. 7. 3. 제정된 대법원내규 제271호 “재판실무편람의편찬·발간및관리등에관한내규” 제8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음.
-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3권 분립의 정신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작성하는 규칙과 내규는 이와 같은 헌법상의 근거에 의해 제정된 독립의 법령으로서 행정부의 위임명령과 집행명령과는 그 법률적 근거 및 법적 성질을 달리 함.
- 위 대법원내규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가 말하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함.
- 따라서 위 내규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형사재판실무편람을 공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 2.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비공개되어야 함(제5호)

- 재판실무편람은 구체적인 재판의 진행과 그 결론도출에 있어 참고할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재판의 상대방에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됨.
- 즉, 재판실무편람에 기재된 내용은 재판절차상 유의할 사항이나 실무관행,

업무처리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기재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위 내규 제7조), 구체적인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의 결론은 재판실무편람이 서술하고 있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게 됨.

- 그런데 재판당사자가 재판실무편람의 내용을 숙지하게 된다면 그들은 선불리 향후 재판 진행 태양이나 결론을 추론하게 되고, 만일 그와 같은 예상과 다른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근거 없이 재판부를 불신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 할 것임. 또한 재판실무편람에 서술된 내용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도모하거나 외부적인 압력과 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됨.
- 이는 결과적으로 법관들로 하여금 제3자적인 지위에서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한 헌법 제103조의 법관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임.
- 따라서 재판실무편람은 재판업무라고 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의해 비공개되어야 할 것임.

### 3. 비밀에 관한 사항임(제7호)

- 재판실무편람은 재판의 진행과 그 결론 도출이라고 하는 재판 업무의 실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자료로서 그 내용은 재판의 주재자인 법관만이 숙지하여야 할 영업상 비밀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구체적인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중요 쟁점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여 실체를 파악하고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관한 노하우를 새로이 그와 같은 재판 업무를 맡게 되는 법관들에게 전수하여 주는 것으로서 영업상 비밀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음.
- 특히 형사재판실무편람은 인신의 구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형사재판의

진행과 결론의 도출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형사재판에 관한 법관의 노우하우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면 법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사법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형사재판실무편람은 법원(법관)이라고 하는 단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원(법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의해 비공개되어야 할 것임.

### III. 결론

-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임.

# 법원행정처행정심판위원회

## 통 지 서

① 사 건	2001행심 4 정보비공개처분취소		
② 청 구 인	박 범 용	③ 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④ 통지사항	<b>법원행정처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b> ▶ 일 시 : 2001. 8. 20. 14:00 ▶ 장 소 : 법원행정처 602호 회의실		
⑤ 근거법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2조의 2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1. 7.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인)



- 주) 1. 이 통지서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의 진행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2. 청구서 이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미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법원행정처행정심판위원회

### 재 결

1. 사 건	2001행심4 정보비공개처분취소		
2. 청구인 및 대리인	박 범 용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의 29. 4층	3. 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4.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음		
6. 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		
7.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1. 8. 20.

법 원 행 정 처 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1.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형사재판실무편람을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01. 2. 형사재판실무편람이라는 책자를 만  
들어 법관전용의 대외비 자료로 분류하여 법관들에게만 배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4. 11. 피청구인에게 위 형사재판실무편람의 공개를 청구하  
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4. 형사재판실무편람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  
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 제6조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7조에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비공  
개대상정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들고 있다.

          정보공개법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  
보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와 같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  
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  
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는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지  
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재판실무편람은 신규임용이나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판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중요 소송유형별로 재판절차상 유의할 사항이나 실무관행, 업무처리기준 등을 정리하여 실무에 참고하도록 제공된 실무참고 책자로서, 구체적인 재판의 진행과 그 결론 도출에 있어 참고할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재판의 상대방에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

즉, 재판실무편람에 기재된 내용은 재판절차상 유의할 사항이나 실무관행, 업무처리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기재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데(재판실무편람의 편찬·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내규 제7조), 재판당사자가 재판실무편람의 내용을 알게 되고 구체적인 재판 등에서 재판실무편람에 적힌 내용에 터잡아 재판부에 대하여 그 내용대로의 재판의 진행과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법관들로 하여금 제3자적인 지위에서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한 헌법 제103조의 법관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재판실무편람은 재판업무에 수반한 '의사결정' 내지 '내부검토' 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1. 8. 20.

정본입니다.

199 · 2001. 08. 20 ·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송은성





이념계도활동규칙 운용에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등록일 2001/04/02 14:06:34

등록자 서준식

내용 경찰청 훈령(아래 훈령) 제 25호(1991.7.31)에 관련된 아래 사항

1. 훈령 제3조에 의거 1991. 7.31 이후 실시한 이념교육 내용

(문서 또는 파일)

- 1) 주민신고 조직요원용
- 2) 지역 및 직장신고 계도요원용
- 3) 특수직업종사자용
- 4) 전경찰관용

2. 훈령 제3조에 의거

- 1) 경찰청이 조직, 관리중인 주민신고망 체계도
- 2) 1항의 1에 의거한 기본, 이동, 고정신고망 및 특별신고망 체계도, 현재 운용중인 망별 인원
- 3) 위 2)에 관련된 각 망의 지역별(각급 경찰서 관할) 현황(인원/주요간부 이름, 직업, 연락처)
- 4) 1항의 2에 의거한 지역 및 직장별 계도요원 인원 및 주요간부 이름, 직업, 연락처
- 5) 1항 3에 의거 특수직업 종사자 인원 및 각 단위별 주요간부 이름, 직업, 연락처
- 6) 4항에 의거 현재 활동중인 이념교육강사 인원, 이름, 직업, 연락처

3. 훈령 제4조에 의거

- 1) 1991.7.31일 이후 연간 이념계도활동계획서, 평가서
- 2) 1항과 2항에 의거 각 단위(각 지방경찰청, 각급경찰서)에서 전개한 활동 내용과 평가 문서

4. 훈령 제5조에 의거

- 1) 1항에 의거해 중앙이념계도반 활동 지원 보고 문서
- 2) 2항에 열거된 각급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내역 보고문서

5. 훈령 제6조에 의거한 월보, 분기보, 연보

- 1) 각 경찰서장이 각 지방경찰청장에 보고한 문건 또는 파일
- 2) 각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에 보고한 문건 또는 파일

처리결과 제목 정보공개청구 민원 회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님께

먼저 저희 경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이념계도활동규칙 운용에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 경찰은 국민의 정부 출범후 조금이라도 더 국민곁에 다가가 친절하고 봉사하는 경찰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활동도 이에 걸맞게 봉사경찰상 구현은 물론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공개를 청구하신 행정정보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대통령 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제23조 및 동 세부시행지침 제34조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는 업무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

2호 및 제6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경찰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4. 9

경 찰 청 장

이념계도활동규칙 [1991. 7. 31 경찰청훈령 제25호]

개정 1999. 1. 20 훈령 제266호

2000. 4. 1 훈령 제30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시대 통일안보관의 정립에 필요한 계도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방침) ①국내·외 정세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국민계도 체계의 재정비 및 강화에 주력한다.

②북한과 좌익폭력세력의 파괴적 실상을 바르게 알려 국민의 안보의식을 확산한다.

③이념계도활동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④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관계기관 단체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이념계도활동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제3조(이념계도요원교육) 이념계도요원의 교육대상, 방법, 내용 강사 등은 다음과 같으며 연간 이념계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①교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신고 조직요원(기본, 이동, 고정신고망 및 특별신고망)
2. 지역 및 직장신고 계도요원(통·리, 직장, 부녀계도요원 및 경찰서 보안지도위원)
3. 특수직업종사자
  - 가. 해안도서주민(선원, 어민, 선착장 상인, 어선통제소 종사자 등)
  - 나. 내륙교통 종사자(택시, 버스운전사, 안내양, 열차종사자 등)
  - 다. 숙박·접객업소 종사자(숙박업소, 요식업소, 이·미용업소 종사자 등)
  - 라. 기타 특수직 종사자(사찰·암자관리인, 독가촌가구주, 우편집배원, 요금징수원, 기타 등)
4. 전경찰관(전·의경 포함)

②교육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신고조직요원 교육은 경찰서 단위로 민방위부서와 협조하여 민방위소집 교육시 병행 실시한다.
2. 지역 및 직장신고계도요원은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매년 상반기중에 2일간 실시한다.
3. 특수직업종사자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주무부서의 회의, 소집교양시 등을 이용 실시한다.
4. 전경찰관 통일·안보 특별교육은 매년 1/4분기중에 지방경찰청, 경찰서별로 소집교육 실시한다.

③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공산권 국가의 동향
2. 국제정세와 북방정책
3.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성과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
4. 남·북한 통일방안

5. 간첩 및 좌익폭력세력의 실체 및 식별방법, 신고요령과 포상제도 등

④강사는 대학교수, 북한문제전문가, 북한이탈주민(승의동지회 홍보요원)

제4조(이념계도활동) 이념계도활동은 대인계도활동 및 계도시설물 설치, 계도유인물 제작·배포 등으로 연간 이념계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①대인계도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반상회, 각종행사, 집회 및 좌담회 등에 참석 이념계도
2. 계도순회란 편성으로 강연 및 영화, 사진전시회 등
3. 벽·오지, 취약도서, 공단주변, 대학가하숙촌, 영세민촌 등 취약지 집중 이념계도
4. 중·고교학생 이념계도
5. 공공단체 및 기업체종사자 이념계도
6. 취약지 마을과의 자매결연 등

②계도시설물 설치 및 유인물 제작배부는 다음과 같다.

1. 계도시설물(입간판, 선전탑등) 및 유인물은 관내 특수성등 지역실정에 맞게 적의 판단하여 설치 및 부착
2.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각종 이념계도자료 및 유인물의 제작배포
3. 이념계도요원, 주민신고조직원 및 취약지 세대주 등에게 년1회 이상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격려 서신발송으로 사기진작
4. 계도시설물 관리책임제 실시

제5조(지원 및 협조) ①경찰청은 중앙이념계도반(승의동지회 홍보요원)의 지방순회계도로 이념계도활동을 지원한다.

②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다음 경우에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 실시한다.

1. 각급학교의 이념교육
2. 한국자유총연맹 등 유관사회단체의 이념계도
3. 종교단체 등의 이념계도
4. 계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유지
5. 취약지 마을과의 자매결연

제6조(실적보고) 경찰서장은 월중 이념계도실적 및 분석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월 3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 보고하되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의 월간, 분기간, 연간 실적 및 종합분석내용을 월보, 분기보, 연보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 7. 3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멸공계몽활동지침에 의거 선발·양성된 멸공계몽요원 및 멸공순회계몽반으로 편성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이념계도요원 및 이념계도 순회반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99. 1. 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찰청규칙의용어정비를위한훈령 제41조)

발신: 인천도지사사랑방 (Fax. 041-5364)

수신: 경찰청 민원실 (Fax. 312-0686)

이의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	서준식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주소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인권운동사랑방 (Tel. 041-5364)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이념계도활동규칙(경찰청 훈령제25호, 아래 훈령) 운용에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건(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통지서수령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2001년 4월 9일에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 (법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 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p>1. 귀청에서는 비공개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아래 정보공개법) 제4조3항 및 제7조1항 1호의 비밀로 분류된 정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현재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훈령에 근거한 것이지 훈령의 근거인 대통령 훈령28호 등이 아닙니다.</p> <p>2. 정보공개 대상이 된 훈령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그 공개로 인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비공개사유로 든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2호도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p> <p>3. 귀 청에서든 비공개 사유중 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한 사유는 일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2조(부분공개)는 공개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된 경우를 이유로 청구한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청에서는 개인을 식별한 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 공적인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p> <p>4. 또한 귀청은 비공개 결정서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불복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11조 3항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붙임 참조).</p> <p>위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에 이의를 신청합니다.</p>	
<p>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1년 5월 9일 이의신청인 서준식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p>			

붙임: 이념계도활동규칙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경찰청 답변

“기분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 경 찰 청

우) 120-020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209 / 전화 313-0565  
보안 1과 과장 장대형 경정 이자하 경위 이건석

문서번호 보일 63700 - 759

시행일자 2001. 5. 15.

받 음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 제 목 정보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님께

먼저 경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5. 9 귀하께서 신청하신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찰청정보공개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귀하께 기 통지한 「정보비공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경찰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 찰 청

